

붙임2. 조건부 사용승인 주요 보완사항

<공문 예시> (파란색 글씨는 주요 보완사항입니다)

문서번호 : 00-00

날짜: 2021.00.00 (공문날짜 ≥ 붙임 조건부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각서 날짜)

수신: 한국환경공단

참조: 신뢰정보증부

제목 : 정부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의 건(예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A 물질(CAS No. 0000-00-00) 협약체의 대표등록자(or 등록하려는 개별 사업체)로서 공동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확보를 위해 조건부 사용승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내역 (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물질명	A
CAS No.	0000-00-00
신청단위	개별 협약체 or 협약체
시험자료 항목	1. 2. 3.
시험자료 종류	시험계획서 or 최종보고서

붙 임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각서 끝.

(주) 가나다라

대표이사 0 0 0 (인) (대표자 날인 필수/전자직인 가능)
(컨설팅사, 담당자 날인 불가)

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공문과 함께 접수해야 조건부 사용승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시험자료 명칭			
	③시험자료 사용 용도			
	④시험자료종류	[] 시험계획서 [] 최종보고서	⑤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개별 사업자 [] 협의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활한 등록이행을 위해 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뒤에 사용각서 날짜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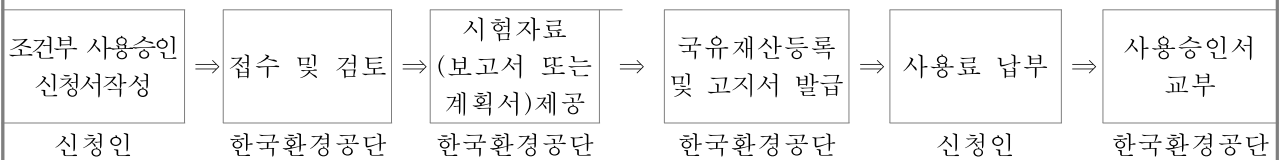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날인 필수! 컨설팅사, 담당자 날인 불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및 수수료 납부방법

1. 이 사용승인 신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합니다(1개 물질 다수 시험항목 작성가능).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조건부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시험자료 종류를 표기합니다.
5. 최종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처리절차



조건부 사용승인 조건

본 신청서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는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위해 향후 국유재산으로 등록예정인 자료를 사용승인 이전에 제공하는 사항으로, 신청자는 향후 시험자료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사용목적)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자료는 화평법 등록이행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다.

제2조(사용료) 사용료는 향후 등록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를 근거로 산출된 사용료를 향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괄 납부한다.

제4조(법적 책임) 제공받은 자료의 불법도용, 무단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승인 자료의 사용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사용승인을 받은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책임배제) 한국환경공단은 사용이 승인된 시험자료의 정확도와 정밀성, 등록 과정에서의 관계기관의 등록승인 여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사용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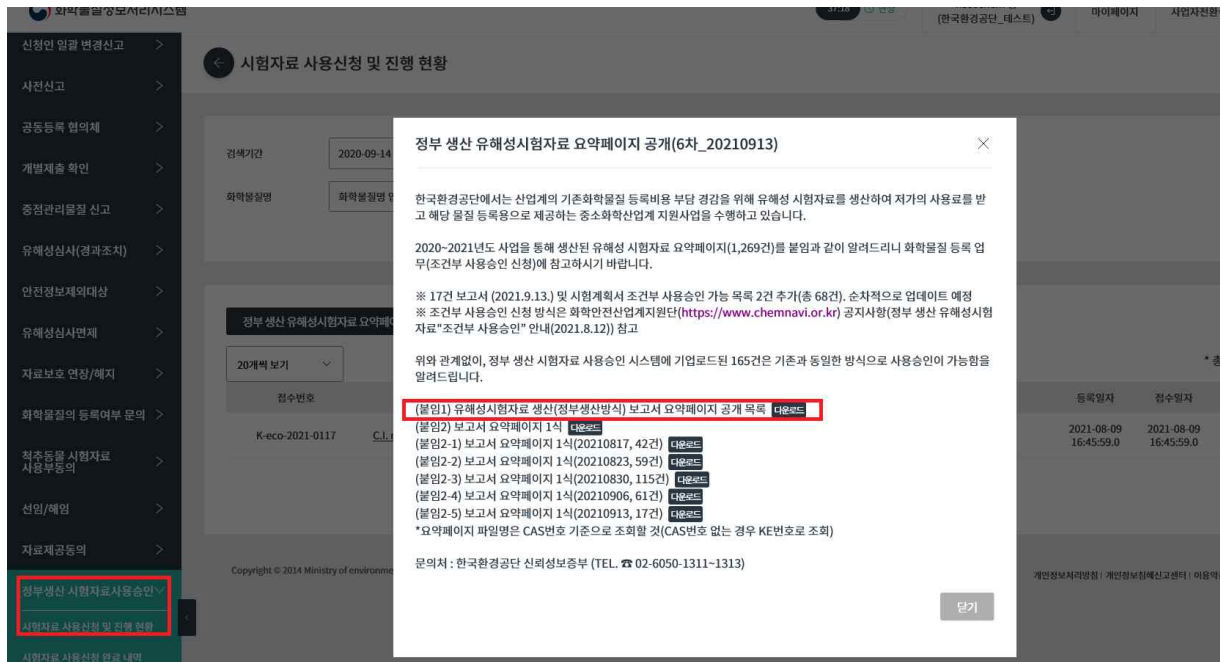
신청인은 상기 조건부 사용승인 조건을 확인 및 준수하겠으며, 향후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앞에 조건부 사용승인신청서 날짜와 동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날인 필수! 컨설팅사, 담당자 날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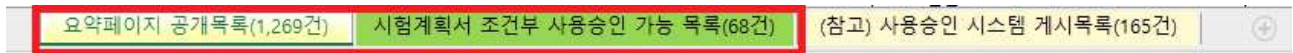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조건부 사용승인 주요 보완사항>

1. 조건부 사용승인신청 시험자료 항목이 조건부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 시험자료 항목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에 로그인 및 정부생산시험자료사용승인 메뉴에서 확인가능



2. 붙임1 자료는 총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시트(요약페이지 공개목록, 시험계획서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목록)에 나온 자료만 조건부 사용승인 가능



- 참고 시트는 '20.~'21. 생산된 자료 중 조건부가 아닌 사용승인이 가능한 자료 목록으로 향후 국유재산 등록 등으로 업데이트 예정

3. 기존 각서 재사용 금지

- 신청서 및 사용각서는 매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조건부 사용승인신청서 상의 날짜와 사용각서 상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주요 질의사항>

Q. 최종 시험자료 승인비용은 언제 알 수 있는가?

A. 시험비용은 자료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 안내 가능

필수 15항목은 금년 말까지 국유재산 등재 후 일괄 납부안내 예정
(사전 안내 검토 중)

시험대체 20항목은 시험종료 후,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Q. 조건부 사용신청 시 시험계획서와 최종보고서 2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A. 신청서 양식에 시험자료 종류에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모두 체크하여 제출. 그리고 시험계획서 대체 20항목 중 시험보고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시험계획서가 아닌 최종보고서를 우선적으로 발송

<당부의 말씀>

조건부 사용승인이 시행됐음에도 빠른시간 내에 시험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현재 상기 보완사례의 빈번한 발생과 지속적인 전화 대응으로 조건부 및 사용승인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서류 보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산업계 빠른 자료 제공을 위해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9월 15일까지 접수된 물량은 9월 24일까지 송부 예정이며 9월 27일부터는 2일 이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